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900번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19년 8월 7일
- 회 부 일 : 2019년 8월 13일

## 2. 제안이유

- 시에서 운영 중인 시립 청소년시설의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시설 주소 등의 오기를 정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운영 중인 시립청소년수련관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함(안 별표 1의 제1호 중 ① 청소년수련관).
- 그 밖에 상위법령과 용어를 통일하고, 시설별 주소의 오기 사항 등을 정비함.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다.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

## 5.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시립청소년활동시설 중 청소년수련관의 명칭을 청소년센터로 변경하고, 청소년시설의 주소 등의 오기를 정정하고자 제출되었음(안 [별표1]).
-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회관(1960~70년대), 심신수련장·근로청소년회관(1980년대), 학생회관·청소년사업관(1987~1991) 등으로 불리었고, 초기 청소년기본계획은 생활권수련시설과 자연권수련시설 등으로 구분했으나,
- 2004년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제정으로 생활권·자연권으로 구분하던 청소년수련시설을 활동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방식을 변경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은 기능과 시설여건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로 구분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 ※ 제1차 청소년기본계획의 청소년시설 구분

- 생활권수련시설 :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실’
- 자연권수련시설 : “청소년수련마을”, ‘청소년수련의집’, ‘청소년야영장’

- ※ 생활권 수련시설 중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 수련관’으로 명칭을 통합하고, 청소년수련실은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음(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1998~2004년).

## 〈 청소년수련시설의 유형 및 특징 〉

시설종류	시설 개념(기능 및 특성)
청소년 수련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li> <li>- 입지조건은 일상생활권 등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li> <li>- 시설은 연건축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둘째 1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집회장,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2개소 이상의 자치활동실, 2개 이상의 특성화 수련활동장, 1개소 이상의 상담실, 1개소 이상 휴게실, 1개소 이상 지도자실이 필수</li> <li>-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에 1개소 이상의 청소년수련관을 설치·운영해야 함(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li> </ul>
청소년 수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숙박기능을 갖춘</b>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li> <li>- 입지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국립·도립·군립공원, 그 밖의 지역 중 자연과 더불어 행하는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li> <li>- 시설기준으로 100명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생활관, 식당, 실내집회장, 야외집회장, 체육활동장, 수련의 숲, 강의실, 특성화 수련활동장, 지도자실, 휴게실, 비상설비, 기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li> <li>- 기본적인 기능은 청소년들에게 자연과 더불어 숙박을 하며 단체 수련활동을 제공하는 것</li> </ul>
청소년 문화의 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li> <li>- <b>다양한 유형의 청소년수련시설 중 가장 작은 규모</b>의 시설로 지역사회에 가장 근접한 지역에 위치하며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li> <li>-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함(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li> </ul>
청소년 야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b>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li> <li>- 입지조건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국립·도립·군립공원, 그 밖의 지역 중 자연과 더불어 행하는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li> </ul>
유스 호스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설비</b>와 부대·편의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014.7.22시행)</li> <li>- 입지조건은 명승지, 역사유적지 부근 및 그 밖의 지역 중 청소년이 여행활동 시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li> </ul>
청소년 특화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b>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b>를 갖춘 수련시설</li> <li>- 입지조건은 일상생활권 등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 사례로는 청소년문화교류센터, 청소년미디어센터, 청소년직업체험센터 등</li> </ul>

- 청소년시설 명칭의 변경배경은 2018년 정부의 ‘제6차 청소년 기본계획정책’ 중 수요자 중심으로 청소년활동 체계를 재구조화 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을 ‘청소년센터(가칭)’로 명칭을 변경하고, 청소년 활동의 허브로써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기능을 확대하려는 정책을 배경으로 추진되었고, 명칭 변경 및 종합시설로의 개편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음.

〈 청소년기본계획 중 청소년수련시설 명칭 변경관련 사항 〉

④ 수요자 중심으로 청소년활동 인프라 재구조화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을 ‘청소년센터(가칭)’로 변경, 종합시설로 개편하고 기능과 역할 재정립 추진 (여성가족부)

<청소년센터(가칭) 유형>

- 가 형 : 건축 연면적 1,500㎡ 초과, 기존 청소년수련관
- 나 형 : 건축 연면적 1,500㎡ 미만, 기존 청소년문화의집
- 다 형 : 청소년자유공간
- 라 형 : 청소년아카데미(민간주도)

-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을 청소년 활동의 허브(청소년센터)로 개편 및 서비스 다양화 추진
  - 지역 청소년에 대한 개별 지원서비스, 집단 지원 서비스, 지역 자원 조직 및 서비스, 학교교육 활동 연계 서비스 등
  - \* 명칭 변경 및 종합시설로의 개편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추진
- 청소년이 쉬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친구들과 관계형성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자유공간(다형) 신설·운영 활성화 추진
- 돌봄, 역량개발, 놀이와 게임 등을 통하여 학습을 지원하는 민간주도의 ‘청소년아카데미(라형)’ 신설 추진

- 평생교육국은 ‘청소년 수련관의 명칭이 교도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라는 이미지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하게 되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발표한바 있으며, 엠보팅, 유스내비 등을 통해 새로운 청소년수련관의 명칭을 제안을 받아 (2019.4.3.~18., 15일간) 심사(6명의 외부 심사위원, 청소년, 청소년전문가, 네이밍 전문가 등)를 거쳐 ‘청소년수련관’의 새로운 명칭을 ‘청소년센터’로 결정하였음.
- 청소년시설의 명칭 개정은 환경변화, 인식변화 및 청소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특히, 상위법과 부합하는지 여부, 서울시가 추진하는 시설 통합의 적정성 여부, 별표의 수정사항 및 신규추가 시설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종류에 따라 명칭과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 제4조((별표1))는 상위법에 따라 청소년 활동시설을 청소년수련관, 특화시설 및 유스호스텔로 구분하고 있음.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

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 과거, 정책에 따라 다양하게 지칭되던 청소년시설은 시민과 청소년에게 혼란을 주었으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정으로 기능·역할·시설(시설규모 및 설비의 종류)에 따라, 명칭을 특정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통일하였는바, 법령의 개정없이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명칭을 조례가 법령과 다르게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명칭변경의 대안으로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의 별칭을 ‘아이월센터’로 사용하는 것과 같이 조례상 청소년수련관의 명칭을 변경하지 않고, 별칭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상 청소년수련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청소년수련관이 조례의 청소년센터를 지칭한다고 명시하는 조항의 신설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평생교육국은 ‘2018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계획을 근거로 2018년 9월부터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과, 시립광진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종합지원센터로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2021년까지 시립청소년수련관 21개소 모두를 종합지원센터로 기능 확대하여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활동·상담·보호·마을학교 등을 통합하여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음.

1) ‘2018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3185, 2018.2.12) 4페이지, 44페이지 발췌, 요약, 재구성

○ 그러나,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활동시설과 복지시설(상담시설)의 통합화만을 계획하고, 보호시설인 쉼터인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통합운영에서 배제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청소년보호시설도 통합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쉼터를 이용 중인 청소년들의 인권과 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쉼터는 통합의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은 수련시설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청소년 특화시설 및 유스호스텔은 전용시설로 설치하도록 하고, 다른 용도와 복합 시설 및 혼합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 다만,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은 청소년활동과 불가분의 요소로 문화·체육 시설에 한정하여 복합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시의 청소년시설 통합화는 상위계획에는 부합한다고 할 것이나, 법령과 규칙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법률적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평생교육국은 법령개정 건의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19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 중 수련시설 설치 및 허가 시 유의사항 〉

○ 수련시설 설치 및 허가 시 유의사항

- 복합시설로 설치금지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청소년특화시설 및 유스호스텔은 전용시설로 설치, 다른 용도와 복합시설로 설치 금지

다만, 청소년수련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시설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의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 체육시설과는 복합설치 가능

- 동일 건물 및 부지 내에 다른 종류의 수련시설 중복 설치 금지
- 다만, 청소년문화의집은 규모의 특성상 복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음
  - \* 복합시설이란 동일 건물에 건축법상 종류가 다른 종류의 시설을 2개 이상 설치하는 경우를 말함

### - 수련시설과 타 용도 시설 혼합설치 금지

- 수련시설로 허가받은 부지 내에 타 용도 시설과 혼합 설치 금지(수련시설 운영의 독립성 확보 필요), 다만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의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과의 혼합 설치 가능
- 수련시설 인접 부지에 타 용도 시설(「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의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은 제외)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용도 시설의 전용 진입도로 개설 및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수련시설과의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 있음.

※ 출처 : 여성가족부, 2019, 2019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 9페이지 발췌

- 의회는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현행 유지해야 할지,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를 것인지 판단해야 하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으로 보여지는바, 이에 대한 입법기술적 측면과 함께 입법정책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평생교육국은 정책에 따라 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며, 정책과 입법의 선후 문제는 닭과 달걀의 선후 문제와 같으나, 최소한 시장제출 안건의 경우에는 법적 체계 통일성 또는 적법성을 확보한 후 제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부가적으로, 청소년시설의 명칭은 본 조례 [별표1]로 규율됨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국은 내부판단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명칭을 변경·확정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은 조례에 따라 업무의 한계와 범위가 규정됨을 인지할 수 있도록 소관 조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평생교육국이 제출한 본 개정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안이유**

시에서 운영 중인 시립 청소년시설의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시설 주소 등의 오기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운영 중인 시립청소년수련관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함(안 별표 1의 제1호 중 ① 청소년수련관)
- 나. 그 밖에 상위법령과 용어를 통일하고, 시설별 주소의 오기 사항 등을 정비함

출처 : 의안번호 900,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췌

- 본 안건의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은 명칭개정의 이유, 필요성, 시민이 원하는지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결과, 개정될 명칭의 타당성 및 적정성, 적법성 여부 등에 설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명칭개정이 가지는 의의(청소년시설의 통합), 의미(청소년시설 통합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에 대한 분석없이, 단순한 [별표]의 용어수정 및 주소수정으로 그 의미를 축소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한 채 제출하여 의회로 하여금 조례 개정의 이유와 효과를 오인토록하여 흠결있는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1) 입법예고: 생략

- 청소년시설의 명칭을 현행화하고 오기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함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출처 : 의안번호 제900번,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입법예고

- 청소년정책의 새로운 전달체계 구축(청소년수련시설과 상담시설 등의 통합, 명칭 개정의 의의)은 명칭의 변경만으로 실현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시설의 통합 중 시행착오를 거치며 장기적으로 개선·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평생교육국은 가시적인 성과인 명칭변경에만 집중하기보다, 현재 시행 중인 시범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평가 및 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수련관의 센터변경시 간판, 기존 홍보자료 및 명함 등의 교체로 비용이 발생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10억원 미만일 것이라는 단순 추정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는바, 관련 비용을 민간위탁기관에 전가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본 개정의 배경이 되는 청소년기본계획(제6차)은 2018년에 발표되어 5년간 추진될 예정이며,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청소년 관련 법체계 정비도 계획하고 있는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명칭개정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명칭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 후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청소년 관련 법체계 정비 (여성가족부)

- 청소년 관련 법률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 방안 마련 추진

\* 정책이념과 기조의 보강, 정책수단의 변화, 법령상의 흠결, 사문화된 조문 보완·정비 등

※ 출처 : 제6차 청소년기본계획, 76페이지 발췌,

- 한편, 금번 임시회에 본 개정안과 함께 제출된 민간위탁동의안 중 시립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와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이 신설될 예정이나, 시장이 제출한 내용에는 두 시설에 관한 사항은 누락되어 있음.
- [별표1]의 시설에 한정하여 위임·위탁<sup>2)</sup>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별표1]의 현행화는 중요한 사안이나, 판례는 의회의 조례 제안권에는 행정기구 설치는 포함되지 않고, 시장의 권한으로 판시하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은 시설의 설치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 및 지속적인 현행화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2)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별표에 청소년시설을 추가·삭제, 변경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인 조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원의 발의로 이를 수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추48 판결

지방자치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를 관리·집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고유한 권한과 이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을 가지도록 하는 반면 지방의회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기구의 설치권한을 견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으로서 제안한 행정기구의 축소, 통폐합의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으로서 제안한 행정기구를 종류 및 업무가 다른 행정기구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지방의회가 의결 및 재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 본 조례 제10조는 [별표1]의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만 운영을 위임·위탁할 수 있으나, 금번 회기에 의회동의를 요하는 신규 청소년시설은 [별표1]에 포함되지 않았는바, 추후 심의될 시립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와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은 동의를 대상이 될 수 없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의회의 동의는 하자있는 동의로 무효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바, 이를 감안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평생교육국은 소관 조례의 면밀한 분석과 검토로 적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본 조례의 [별표1]은 서울시에서 설립·운영하는 시설을 확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별표1]의 시설에 한정하여 [별표2](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sup>3)</sup>할 수 있음.

- 청소년시설과 관련하여 금번에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 중 시립청소년이동쉼터는 실제 4개(서북, 서남, 동북, 동남)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별표1]에는 두 개의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고, 평생교육국은 위임·위탁의 대상이 되는 [별표1]의 등록된 사항에 따라 4개의 시설을 2개의 동의안으로 제출하였음.

※ 의안번호 924번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북/서남) 민간위탁동의안

※ 의안번호 925번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남/동북) 민간위탁동의안

- 청소년시설의 명칭에 따르면 서울의 서쪽지역을 사업의 대상지로 하고 있는 서북·서남 시립청소년이동쉼터는 한강의 북쪽지역을, 서울의 동쪽지역을 사업대상지로 하고 있는 동북·동남 시립청소년이동쉼터는 한강의 남쪽을 담당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바, [별표1]의 수정으로 실질적인 사업수행 상황을 감안하여 [별표1]의 내용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평생교육국에서는 최초 4개의 시설로 분리하여 동의안을 제출 예정이었으나, 본 조례의 정한 바에 따라 별표1의 등록된 시설만을 동의할 수 있어, 4개의 시설을 각각 동의할 수 없게 되어, 이를 [별표1]에 따라 2개의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음.

---

3)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⑤ 운영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별표 1의 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게 월 사용료에 한정하여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⑥ 제1항에 불구하고 운영자는 다동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이 별표 1의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이 경우 다동이 행복카드에 기재된 자녀수가 3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또한, 의회는 동의안에 대해서는 심사단계에서 수정의결을 할 수 없고, 가결과 부결로 의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하나의 동의안에 동의를 요하는 두 가지 사항을 하나로 병합하여 제출하였음.

※ ‘동의안’과 ‘승인안’은 수정가결을 할 수 없고, 가결과 부결로 의결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안전제출은 집행부에게는 부결의 이유가 있는 사항으로 인해 하자없이 동의를 요하는 사항도 부결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의회는 반대의 상황으로, 흠결이 있는 안건이 있음에도 동의안 전체를 가결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의회가 수정의결을 할 수 없는 동의안의 경우 하나의 안건에 단 하나의 동의사항을 담도록 하여, 시의회의 의결이 서울시의 행정의 흠결과 하자를 제거하고, 타당성과 정당성을 얻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로 삼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에서 시설을 분리하여 개정할 것인지 이동쉼터를 통합하여 하나의 법인에서 운영하게 할 것인지 이동쉼터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재정립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전 문 위 원	김 태 한
입 법 조 사 관	정 찬 일